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 및 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첫 3개월	4개월~	
장려금	30만원		360만원
특례	100만원	30만원	570만원
남성 인센티브(추가지원)	10만원		12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부여 시 첫 3개월 동안 월 100만원('25.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기존 단가(200만원) 적용)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사업장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지원대상 및 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장려금	30만원	360만원
최초사용 인센티브(추가지원)	10만원	120만원

* (최초사용 인센티브) 사업장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 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대상** :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제도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또는 사용), ㉢ 고용(또는 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또는 사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지원내용

구분	1개월 최대 지급액	
	30인 미만 사업장	30인 이상 사업장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월 최대 140만원	월 최대 1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120만원	

* 인수인계기간(각 제도를 사용하기 전 2개월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복직 후 1개월)에도 동일하게 적용



'26년부터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간편해집니다!

- '26.1.1.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대체인력 지원금(3개월 단위) 신청 시 전액 지급

* (이전) 3개월 단위 신청 시 50% + 제도 사용 종료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50% 지급

업무분담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제도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할 동료근로자를 특정하여 지정(5명 이하), ㉢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업무분담수당) 지급

지원내용

구분	30인 미만	30인 이상
육아휴직	월 최대 60만원	월 최대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20만원	

*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지원금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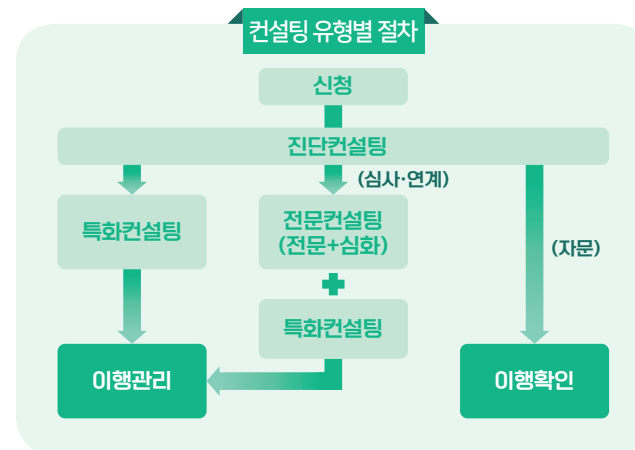
- 노사참여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컨설팅(유연근무제 도입·활용 포함)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근로여건 개선 도모

지원대상

-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지원방식

-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현황 진단 및 맞춤형·수준별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 기업 유형에 맞는 유연근무 유형 등 진단
-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 이행 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2월 중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일터혁신 플랫폼 (www.kwpi.or.kr)) 예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개요

- 근로자가 가족돌봄, 임신, 육아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 취업규칙 등에 단축제도 도입 ■ 근로자의 근태 관리(전자·기계적 방식 등)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 육아기 10시 출근제**
 - 육아 사유로 임금 감소 없이 주 30시간 초과~35시간으로 단축
 - ①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지원요건을 충족
-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 연장근로 제한 ■ 최소 2주 이상 활용

지원내용

구분	1개월 지급액		1년 최대 지급액
	장려금	임금감소액 보전금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30만원	20만원	600만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30만원	$\times$ (단, 30시간 이하로 단축시 가능)	360만원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30만원	20만원	60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지원한 경우 지원

- 지원인원** :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한도)
- 지원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3개월 단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활용 ➡ 지원금 신청(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워라밸+ 4.5 프로젝트

사업개요

- 노사 합의로 임금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

지원대상

-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지원 가능

지원요건

- 임금감소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에 노사 합의
-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그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제출
- 출근 및 퇴근 시각 등 적용 대상 근로자의 근태 관리(전자·기계적 방식 등)
- 주당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미만 (부분도입) 또는 2시간 이상(전면도입) 감소
* 평균 근로자수가 증가(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대비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도입일이 속한 달의 직후 3개월)한 경우 추가 지원

지원내용

구분	규모별	유형별 도입 지원	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
지원 수준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생명·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 2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 40만원(1년) (부분도입) 1인당 월 3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 50만원(1년)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 60만원(1년)
	20인 이상 ~ 50인 미만 ▲생명·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 3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 50만원(1년) (부분도입) 1인당 월 4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 60만원(1년)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 80만원(1년)
지원 한도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20인 이상 ~ 50인 미만	100명 단축 대상 근로자 전체 지원	노동시간 단축분에 비례해 한도 설정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은 선정·지원 우대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사업참여 신청서 등 제출(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go.kr))
➡ 심사·승인(노사발전재단) ➡ 주4.5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운영 ➡ 지원금 신청(고용24)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유연근무 장려금

사업개요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사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노동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공통>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①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①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지원내용

- 유연근무 활용 유형에 따라 활용 노동자 당 최대 1년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사차출퇴근(육아기) 재택·원격근무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해당월의 2배 지원

- 신청서 제출일 기준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70명), 10인 미만일 경우 3명까지 지원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심사·승인(고용센터) ➡ 유연근무 도입·활용 ➡ 지원금 신청(고용24)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사업개요

-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 제도를 활용을 위한 기업의 시스템 도입 지원

지원대상

- 소속 노동자에게 유연근무 및 노동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지원제도를 활용하게 할 계획이 있거나 개선할 계획이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 심사·승인
- 참여신청일 이후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 지원
- 지원 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 준수(2년)

지원내용

-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을 개선·교체·구입·대여 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설치비 및 사용료의 80% 범위 내 최대 1천만원 지원
-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30인 미만의 사업주는 시스템 사용료에 한해 100%지원(최대 연 180만원)
- 피보험자 30인 미만의 사업주의 사용료 지원 신청시 3개월 단위 신청 가능
* 지원금 지급 가능한 최대 약정기간은 2년

종류	지원방식
출퇴근 및 인사관리 시스템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시스템, 출입 기록장치 등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 기업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공유, 공동작업 시스템 등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심사·승인(고용센터) ➡ 시스템 도입·개선 ➡ 지원금 신청(고용24)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